

4.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4조(조직) 연구소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팀, 부 또는 실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	제4조(조직) 연구소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팀, 부 또는 실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	법인승인연구소 하부조직의 변경 위임 반영 (이사장 → 총장)
	부 칙 <u>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u>	